

기가 되었다. 설리반 사건이란 미국의 남부 앨라배마에서 시민운동 데모가 있었을 때 주 관리가 흑인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하자 『뉴욕 타임스』가 이를 비난하는 광고를 실었는데, 이 관리가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공인의 명예훼손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여기서 실질적인 악의란 관리의 평판을 손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무시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사실 재판정에서 뉴스보도가 권력 남용을 폭로할 목적이 아니라 악의에 의해 동기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설리반 사건 이후 30여 년 동안 어떤 정부 관리도 언론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다(권혁남, 2002).

한편 사회의 관심거리가 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이른바 제한적·부정적 공인에 대한 전과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과의 내용 중에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혹은 ‘기소중지’등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범인은 전과 몇 범”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김재협, 2002).

### 3. 반론보도청구와 언론중재

#### 1) 반론보도청구권

##### (1) 반론보도청구권의 개념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방송법 제91조).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 규칙 제2조 제4항). 왜냐하면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신속한 반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처분 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피보전권리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그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관한 청구권이 아닌 ‘반론권’이라는 특유의 권리로 그 심판은 독특한 절차에 따라 실현되는 특수한 소송절차이므로 이 반론보도청구의 심판 청구

에 일반 민사상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광범, 2002).

## (2) 반론권의 기원 및 외국 현황

원래 이 제도는 1799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법안으로 제출되었다가 1822년부터 입법화되어 시행된 제도이다. 애초 프랑스에서 이 제도가 고안된 동기는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신장된 언론자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즉, 1789년 이후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지나친 과열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출판매체가 정확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상호비방, 부질없는 정쟁만을 일삼기에 이르자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고안해 낸 제도였다. 프랑스의 반론권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뿐만 아니라 논평, 의견에 대한 반론까지 인정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넓게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석천, 2002).

미국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미국의 대법원은 방송의 경우는 반론권을 인정하지만 신문의 반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방송의 반론권은 인신공격의 원칙(personal attack rule)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인신공격의 원칙이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직성(honesty), 인격(character), 성실성(integrity)을 공격하는 방송을 했을 때, 방송국은 그러한 공격이 있을 후 일주일 이내에 공격을 당한 개인이나 집단에 통고해야 하며, 이들이 응답할 수 있는 합당한 방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혁남, 2002).

이 원칙이 제기된 것은 1969년 레드 라이온 방송(Red Lion Broadcasting Company, WGCB)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극단적 보수주의 ‘라디오 목사’인 빌리 하기스(Billy Hargis) 목사는 레드 라이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프레드 쿡(Fred Cook)이라는 사람과 그의 책에 대해 공격하였다. 하기스 목사는 “프레드 쿡은 누구인가? 그는 익명이지만 공개적으로 뉴욕의 한 공무원을 비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뉴욕 텔레그램(New York Telegram) 회사에서 해고된 인물이다. 또한 그는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쿡은 하기스 목사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200개의 방송사에 대해 무료 반론의 시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레드 라이온 방송사 사주는 냉정히 이를 거절하고, 대신 쿡에게 광고요금에 준한 유료 반론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결국 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들은 반론을 위한 무료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의회와 FCC가 방송사들로 하여금 인신 공격과 정치사실에 대한 반론시간을 주도록 요구한 것은 수정 헌법 1조(언론·신문·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조항)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방송과는 달리 신문의 반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은 『마이애미 헤럴드』 대 토닐로(*Miami Herald v. Tornillo*) 사건이다. 토닐로는 플로리다 주의회에 출마하였는데,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rald*)』 신문이 두 번에 걸쳐 사설에서 이 후보를 공격하였다. 이에 토닐로는 이 신문에 대해 반론권을 요구하였다. 플로리다 주법에 의하면 신문에 의해 공격을 받은 후보들은 반론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권혁남, 2002).

따라서 과연 이러한 플로리다 주법이 합헌 또는 위헌 중 어느 쪽인지, 대법원의 판결에 초점이 모아졌다. 신문에 반론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유명한 법학자인 제롬 배론(Jerome Barron)이 대리인으로 나섰지만 대법원은 방송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편집자는 신문에서 무엇이 보도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반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신문은 방송과는 달리 독자란과 같은 여러 형태의 반대 의견 칼럼 등이 있다는 사실에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

우리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처음 규정된 것은 1980년 12월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였다.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1964년 제정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출판법을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가장 특이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언론중재제도’이다. 언론중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로,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그 행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언론기본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초창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탄압수단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 제도는 20년 이상 유지되어 오면서 이제는 언론분야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언론의 양적, 질적 팽창과 사회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고양으로 반론보도 신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함석천, 2002).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나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일부 생략)...반론보도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신문,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함석천, 2002).

## 2)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차이

반론보도청구와 흔히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정정보도청구권’이다. ‘정정(訂正)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매체 혹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실무상 인정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정정보도청구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보도가 있을 것과 ‘보도가 허위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허위 아닌 진실에 대한 반론도 가능한 반론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반론청구는 언론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행사기간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보도 후 6개월 이내)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함석천, 2002).

## 3) 반론보도청구권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실제 사건에서 아래의 사유는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 ①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②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③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예를 들면, 도박을 장려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상 세 가지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의 본래 목적인 올바른 여론형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정보의 흐름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사유로 둔 것이다. 그밖에,

④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함석천, 2002).

#### 4) 반론보도청구 행사 절차

반론보도청구는 그 행사절차의 측면에서 볼 때 협의에 따른 행사절차, 언론중재를 통한 행사절차, 재판상 행사절차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가지 절차는 서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다.

반론요구자와 언론사는 언론중재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절차라 굳이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은 특별히 언론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추어 당사자끼리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정간법 제16조와 방송법 제91조).

그 규정을 보면, 반론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이건 방송이건, 피해자가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는 날부터,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함석천, 2002).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는 직접 언론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를 거쳐야 한다(정간법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언론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언론중재(言論仲裁) 전치주의’(前置主義)라고 부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반론보도청구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민들 역시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 자료수집과 연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법적인 분쟁해결 방식과 관련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언론중재제도는 헌법상 가장 기본되는 두 기본권, 즉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야에서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함석천, 2002).

#### 5) 추후보도청구권

이는 반론보도청구에 유사한 것으로 오스트리아의 출판법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간법 제20조, 방송법 제91조).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은 여기에 해당하나, 법원의 공소기각, 면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나 검사의 공소권 없음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보도청구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게 되고, 그 밖에 행사요건이나 절차는 모두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 (함석천, 2002).

### 4. 언론계의 예방책과 대응

이제 우리 언론사들도 외국의 언론사들처럼 언론소송에 매우 민감해지고 있다. 한 기자는 “재벌언론이나 언론재벌이 아니고서는 배겨나기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다. 기자 개인은 더욱 고통스럽다. 소송자료를 준비하느라 다른 취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요즘에는 기자에게 소송액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라고 독백을 하기도 한다.

언론인들의 언론소송 노이로제는 언론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취재행위와 보도를 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비판적인 보도를 원칙적으로 제약한다. 한 방송사는 2001년 9월 수십억 원대의 내기골프를 쳤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기업 소유주 사건에 대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도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수형, 2002)

언론사 입장에서의 언론소송 예방책을 살펴보기로 하자.